

서울고등법원 2024. 8. 28 선고 2024나2021059 판결 [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8. 28 선고 2024나2021059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4. 17 선고 2023가단15106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성

담당변호사 이희준

피고, 항소인 B지역주택조합

변론종결 2024. 7. 24.

판결선고 2024. 8. 28.

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4. 17. 선고 2023가단151062 판결

주문

-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[별지] 금액표의 ‘입금액’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해당 ‘입금일’란 일자의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다(피고는 항소 후 제1심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).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.

2. 결 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유경, 판사 손철우, 판사 황승태

별지